

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최조웅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97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7년 2월 3일
발 의 자 : 최조웅·박운기·박마루·한명희
박준희·김경자(강서)·이승로
이병해·장인홍·진두생 의원
(10명)

1. 제안이유

「환경분쟁 조정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목적 규정을 구체화하고, 중재제도 신규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의 환경권의 구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목적 규정 구체화(안 제1조)
- 나.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 확대(안 제2조제1항)
- 다. 중재제도 도입 관련 운영 규정 신설(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)
- 라. 중재신청 수수료 신설(안 제7조 및 별표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환경분쟁 조정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해당부서 협의
- 다. 기 타
 - 1) 신·구조문대비표
 - 2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운영에”를 “구성 및 운영에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15명의”를 “20명 이내의”로 한다.

제4조 조 제목 “(조정위원회 및 재정위원회의 운영 등)”을 “(조정위원회·재정위원회·중재위원회의 운영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조정위원회·재정위원회의”를 “조정위원회·재정위원회·중재위원회의”로 한다.

- ① 조정위원회(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. 이하 같다), 재정위원회(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중재위원회(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.

제7조 중 “알선·조정 또는 재정을”를 “알선·조정·재정·중재를”로 한다.

별표 중 “재정신청”을 “재정·중재신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환경분쟁 조정법」 제4조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<u>운영에</u>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구성</u> <u>및 운영에</u>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위원회 구성) ① 서울특별시 환경분쟁 조정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<u>15명</u>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2조(위원회 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<u>20명 이내의</u> ----- -----.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조정위원회 및 재정위원회의 운영 등) ① <u>조정위원회(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재정위원회(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.</u></p> <p>② <u>조정위원회·재정위원회의</u>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안전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4조(조정위원회·재정위원회·중재위원회의 운영 등) ① <u>조정위원회(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. 이하 같다), 재정위원회(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중재위원회(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.</u></p> <p>② <u>조정위원회·재정위원회·중재위원회의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7조(수수료) ① 위원회에 <u>알선·조정 또는 재정을</u> 신청하는 자, 조정·재정에의 참가를 신청하는 자,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[별표]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수 수 료</th> </tr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 청 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조정가액별 수수료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알선신청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,000원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조정신청</td> <td> 1. 조정가액 500만원이하 : 10,000원 2. 조정가액 500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: 1.의 수수료에 500만원을 초과한 10,000원마다 15원을 가산한 금액 3.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: 2.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,000원마다 10원을 가산한 금액 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재정신청</td> <td> 1. 조정가액 500만원이하 : 20,000원 2. 조정가액 500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: 1.의 수수료에 500만원을 초과한 10,000원마다 30원을 가산한 금액 3.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: 2.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,000원마다 20원을 가산한 금액 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참가신청</td> <td> 1. 조정절차참가신청 : 당해 참가인의 조정가액에 대하여 조정신청의 수수료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2. 재정절차참가신청 : 당해 참가인의 조정가액에 대하여 재정신청의 수수료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증거보전 신청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,000원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 비고 : 조정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500만원으로 하되, 추후 산정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그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한다.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수 수 료		신 청 별	조정가액별 수수료	알선신청	10,000원	조정신청	1. 조정가액 500만원이하 : 10,000원 2. 조정가액 500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: 1.의 수수료에 500만원을 초과한 10,000원마다 15원을 가산한 금액 3.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: 2.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,000원마다 10원을 가산한 금액	재정신청	1. 조정가액 500만원이하 : 20,000원 2. 조정가액 500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: 1.의 수수료에 500만원을 초과한 10,000원마다 30원을 가산한 금액 3.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: 2.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,000원마다 20원을 가산한 금액	참가신청	1. 조정절차참가신청 : 당해 참가인의 조정가액에 대하여 조정신청의 수수료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2. 재정절차참가신청 : 당해 참가인의 조정가액에 대하여 재정신청의 수수료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	증거보전 신청	5,000원	비고 : 조정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500만원으로 하되, 추후 산정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그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한다.		<p>제7조(수수료) ① ----- <u>알선·조정·재정·중재를</u> -----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[별표]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수 수 료</th> </tr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 청 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조정가액별 수수료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알선신청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,000원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조정신청</td> <td> 1. 조정가액 500만원이하 : 10,000원 2. 조정가액 500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: 1.의 수수료에 500만원을 초과한 10,000원마다 15원을 가산한 금액 3.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: 2.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,000원마다 10원을 가산한 금액 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재정·중재 신청</td> <td> 1. 조정가액 500만원이하 : 20,000원 2. 조정가액 500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: 1.의 수수료에 500만원을 초과한 10,000원마다 30원을 가산한 금액 3.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: 2.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,000원마다 20원을 가산한 금액 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참가신청</td> <td> 1. 조정절차참가신청 : 당해 참가인의 조정가액에 대하여 조정신청의 수수료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2. 재정절차참가신청 : 당해 참가인의 조정가액에 대하여 재정신청의 수수료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증거보전 신청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,000원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 비고 : 조정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500만원으로 하되, 추후 산정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그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한다.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수 수 료		신 청 별	조정가액별 수수료	알선신청	10,000원	조정신청	1. 조정가액 500만원이하 : 10,000원 2. 조정가액 500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: 1.의 수수료에 500만원을 초과한 10,000원마다 15원을 가산한 금액 3.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: 2.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,000원마다 10원을 가산한 금액	재정·중재 신청	1. 조정가액 500만원이하 : 20,000원 2. 조정가액 500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: 1.의 수수료에 500만원을 초과한 10,000원마다 30원을 가산한 금액 3.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: 2.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,000원마다 20원을 가산한 금액	참가신청	1. 조정절차참가신청 : 당해 참가인의 조정가액에 대하여 조정신청의 수수료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2. 재정절차참가신청 : 당해 참가인의 조정가액에 대하여 재정신청의 수수료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	증거보전 신청	5,000원	비고 : 조정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500만원으로 하되, 추후 산정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그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한다.	
수 수 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 청 별	조정가액별 수수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알선신청	1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조정신청	1. 조정가액 500만원이하 : 10,000원 2. 조정가액 500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: 1.의 수수료에 500만원을 초과한 10,000원마다 15원을 가산한 금액 3.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: 2.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,000원마다 10원을 가산한 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재정신청	1. 조정가액 500만원이하 : 20,000원 2. 조정가액 500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: 1.의 수수료에 500만원을 초과한 10,000원마다 30원을 가산한 금액 3.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: 2.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,000원마다 20원을 가산한 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참가신청	1. 조정절차참가신청 : 당해 참가인의 조정가액에 대하여 조정신청의 수수료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2. 재정절차참가신청 : 당해 참가인의 조정가액에 대하여 재정신청의 수수료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증거보전 신청	5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고 : 조정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500만원으로 하되, 추후 산정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그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수 수 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 청 별	조정가액별 수수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알선신청	1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조정신청	1. 조정가액 500만원이하 : 10,000원 2. 조정가액 500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: 1.의 수수료에 500만원을 초과한 10,000원마다 15원을 가산한 금액 3.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: 2.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,000원마다 10원을 가산한 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재정·중재 신청	1. 조정가액 500만원이하 : 20,000원 2. 조정가액 500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: 1.의 수수료에 500만원을 초과한 10,000원마다 30원을 가산한 금액 3.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: 2.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,000원마다 20원을 가산한 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참가신청	1. 조정절차참가신청 : 당해 참가인의 조정가액에 대하여 조정신청의 수수료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2. 재정절차참가신청 : 당해 참가인의 조정가액에 대하여 재정신청의 수수료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증거보전 신청	5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고 : 조정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500만원으로 하되, 추후 산정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그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(위원회 구성)에서 위원이 15명에서 20명 이내로 위원 수 확대됨에 따라 비용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(제3조제1항제1호)
- 나. 비용추계 결과 = 18,000천원

(단위: 천원)

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
18,000	3,600	3,600	3,600	3,600	3,600

○ 비용추계 전제

- ‘환경분쟁조정위원회’는 분기별 1회 개최 가정(연간 총 4회 기준)
- 증가된 위원회 위원 5명은 모두 외부위원으로 가정

○ 비용추계 세부내역

- 연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비 : 3,600천원
 - 위원회 참석수당 : 150,000원 × 5명 × 년 4회 = 3,000천원
 - ※ ‘서울특별시 2017년도 예산편성 기준’ 중 위원회 참석수당 기본료(10만원)에 위원회가 2시간 이상 진행된다고 가정하고 추가비(5만원)포함 금액 준용
- 업무추진경비 : 30,000원 × 5명 × 년 4회 = 600천원
 - ※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해설집 및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 별표 1(음식물 가액범위 : 3만원)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예산분석팀장 이철희

주 무 관 박경순

☎ 02-3705-1277

e-mail : kssunbi@seoul.go.kr